

‘교회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포럼

일시 |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7시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 2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순서

사회: 양희송 대표(청어람 ARMC)

7:00 (5분)	취지 소개	윤경아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7:05 (20분)	발제 1. 교회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조중신 센터장 (한국성폭력위기센터)	p03
7:25 (20분)	발제 2. 교회, 성폭력 피해에 왜 취약한가?	최순양 박사 (이화여대)	p14
7:45 (20분)	발제 3. 교회는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임보라 목사 (섬돌향린교회)	p22
	참고자료 1 ○○교회 성폭력사건 등의 처리를 위한 규정		p31
8:05 (10분)	Break time		
8:15 (50분)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참고자료 2. 단체 소개		p34

1

교회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내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의 고통

조중신 센터장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이다. 즉 위력, 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매개로 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또는 성적인 부위에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위로써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법률에서는 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하고 저항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최협의설)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이도 인정하기도 한다.

2. 관련 용어의 개념

- 1)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 반항의사는 범죄의 기수(즉 삽입 시)에까지만 있으면 된다.
- 2) 간음: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케 하는 것, 성교행위.

- 3)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4) 성희롱: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봉사 강요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
- 5) 성학대: 양육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수하의 대상(아동, 포로, 수용자) 등에 대한 성적 가혹 행위.
- 6) 성추문: 공권력, 고위공직자, 교육자, 성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적 추문.
- 7) 위력: 일반적으로 폭행·협박 기타의 정신적인 위압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 폭행협박의 정도에 못미쳐도 된다.
- 8) 위계: 행위자가 이루려는 목적과 수단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착각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 9) 친고죄: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유일한 수사의 단서이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또는 재판중이라도 고소가 취하되면 무조건 사건은 종결된다. 미성년자의 고소권 행사는 부모에게 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친고죄 폐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 중 친고죄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다. (비친고죄: 제3자의 신고 및 수사관의 인지로 고소가 진행되는 범죄)

3. 성폭력 유형

1) 피해유형 별

강간(미수, 치사, 치상), 유사강간, 준 강간, 강간 미수(치상), 특수강간(야간 침입, 흥기 위협, 강도 강간, 운간), 의제 강간, 친족 강간, 장애인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치상),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밀집 장소 내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배포,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는 처벌), 성희롱(사인간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기타 언어 추행, 모욕), 기타 성추문, 피해 당시의 가해자 상해, 피해자 주변인의 폭행, 피해 이후의 협박, 공갈, 금품갈취, 스토킹, 무고,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2) 피해자의 성별

- 여성피해(남/여, 여/여), 남성피해(남/남, 여/남)

3) 피해자 연령 별

- 어린이 피해(학령 전 유아/ 초등학교 13세 미만):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 청소년 피해(중·고등학교 14세~19세 사이):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간음
- 성인 피해 (20세 이상 성인, 노인)

4) 피해자 특수성

장애인/ 외국인/ 새터민 피해자

5)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별

① **아는 사람**: 친족(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공동 거주하는 친인척 가중처벌/ 그 외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배우자 성폭력(부부강간), 직장 내 (상사, 동료, 거래처 사람, 고객에 의한) 성폭력, 학내(학교, 학원 교사, 강사, 선배, 후배, 동급생에 의한) 성폭력, 군대 내(상사 고참, 군 관계자에 의한 피해) 성폭력, 종교단체 내(성직자에 의한 신자) 성폭력, 의료 행위 중의 성폭력, 시설 내(관리자에 의한 수용자 피해, 수용자 간의 피해), 데이트 상대에 의한 성폭력, 이웃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② **모르는 사람**: 강도, 불량배, 택시기사, 행인, 음란전화 등 신원 미상의 가해자.

4. 교회 내 성폭력의 특성 및 사례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교별 범죄자 수는 전인구의 18.32%를 차지하는 개신교신자가 2,170건, 전인구의 22.8%를 차지하는 불교신자가 1,405건, 전 인구의 10.94%를 차지하는 천주교인이 52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은 1위가 목사로 나타났다. 어쩌면 교회 내 사건은 고소나 상담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사건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상담현장에 접수된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가해자가 성직자(목사, 전도사)이고, 피해자가 신도, 하급 성직자, 교회 직원인 경우이다. 가끔 목회를 하지 않지만 신학교수이면서 목사의 신분을 가진 자, 선교사, 성가대 지휘자, 장로 직위를 가진 자가 가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폭력과 위협보다는 유인과 위계가 많이 작용한다. 교리를 인용하여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고, 병의 치유를 빙자한 안수행위, 악령을 쫓아준다는 구마행위, 개인 신상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목사가 성령을 전해 주겠다고 여신도에게 성교 강요.
- 아픈 아들을 둔 여신도에게 엄마가 악령에 씌워 아들이 병이 났으니 악령을 쫓아주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갈 수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구마행위를 해야 한다고 목사 여신도를 추행, 강간.
- 목사가 친딸을 초등 5학년부터 19세까지 강간.
- 60대 신학교수이며 목사가 후원을 해주겠다고 개척교회 목사 부인을 강간, 이후 그의 딸도 비서로 채용한 뒤 지속적으로 강간.
- 성가대 지휘자에게 강간을 당한 여신도가 고소한 후 그의 집에서 30여명의 여신도와의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비디오로 제작해 놓은 것을 압수.
- 교육전도사가 불우한 처지의 여중생을 돌봐주면서 강간.
-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수용자인 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강간.
- 해외 거주하는 교민의 아동을 선교사가 추행.

- 친정에 다니러 온 지적 장애여성이 우연히 시장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유인하여 데려가 강간.
- 목사가 여신도 핸드폰에 신분을 감추고 접근, 통신매체음란행위를 함.
- 목사가 여신도에게 추행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로 맞고소.
- 목사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여성의 치마 속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체포.

특히 성직자는 막중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신도들에게는 가부장 제도 하의 가장인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적 아버지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목사를 비판하면 저주 받는다’, ‘목사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등 잘못된 신격화와 무책임한 맹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한편 기복신앙과 성장제일주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라도 설교를 잘 하고 은혜가 많은 목사라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오히려 은폐하고 비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성직자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신도의 자발적인 추종과 순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헌납적인 모습으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에 어렵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여 문제 제기할 때 성직자를 비호하는 교인들의 비난을 받거나 종교기관 내 세력 간 다툼에 이용되기도 한다. 교단의 책임회피나 압력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하는 단체나 사건을 보도한 매스컴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직자의 가해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자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거의 가해자의 구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특수한 집단의 내부 사정을 탐문하는 어려움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도의 취약점과 정신적인 의존을 빌미로 자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고 준 강간, 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자는 논란도 있고,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주는 변호사 중에는 종교가 얽힌 사건은 개입하기 어렵다는 토로를 하기도 한다.

- 100명도 안되던 사교회를 2만 명으로 키운 스타목사가 주례를 부탁하러 온 여신도를 추행하는 등 10여 년간 수십 명의 여신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 성적 발언을 하여 2010년 7월 문제제기 되자 2010년 말 교회를 떠나는 대가로 주택구입비 10억, 퇴직금 1억 1천만원, 2년간 수도권 개척금지에 따른 생계비 1억 3천만 원, 성 중독 치료비 1억 등 13억 4천 5백만원을 받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교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함. 이후 꽃뱀이 목사를 유혹했다, 이단이 목사를 음해했다고 소문이 무성해짐. 2년이 못되어 대학가에 교회를 시작하여 1천여 명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다. 노회는 정식 재판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처리를 미룸.
- 성직자에 의한 강간을 드러낸 후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에게 성직자를 음해하는 마귀로 지탄받았으며, 목사의 반대편 세력이 비호하고 지원해 줄 것처럼 접근하였다가 자기들 이

익에 부합하게 이용하고 소외시켰다. 목사는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여 다시 교회에 봉직하고 있으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며 설교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난립하고 있고,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신학교의 난립으로 자질 부족한 성직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사이비 종교라고 지칭되는 이단적인 종교기관에서는 성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 JMS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교육을 받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 당하듯 논리적 판단을 상실한 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

교회 내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기득권자나 가해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교회(종교)의 특수성이다. 그러나 범죄에 관한 한, 교회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회개를 했다해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아야 한다¹⁾

5.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후유증

1) 신체적 문제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임신, 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타박상, 두통, 얼굴이 달아오름, 지속적 출혈, 생리 중단, 세균감염, 신체적 상해 등의 증상을 호소. 장기적인 신체적 영향으로는 임신, 병적 식욕과다, 식욕감퇴,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증상 호소.

2) 심리적 문제

① 불안/ 두려움

협박에 대한 두려움, 남성에 대한 두려움, 사건 재발에 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

② 우울

우울증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하나이다. 우울증상은 울음, 수면장애, 식사장애, 피로감, 자살충동, 죄의식, 무가치함, 절망 등으로 표현되며, 의욕상실,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함, 열등감에 사로잡힘, 주변사람의 눈치를 보게 됨, 소극적으로 변함, 위축, 자신에 대한 혐오감, 식욕상실, 식음 전폐 등의 우울증상이 나타난다. 회복할 수 없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힘(손상된 물건 신드롬), 특히 자살 사고, 자해, 식사의 거부, 여성성의 거부, ‘화’를 동반하여 무력감과 절망,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외로움.

1) 2014년 12월 20일 뉴스 M에 기고한 구교형 칼럼에서 발췌함.

아동의 우울 증상은 수면 장애, 식욕장애, 피로감, 복통 등 신체 증상을 많이 동반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의 저하, 신체상의 왜곡, 또래와의 관계 장애를 낳는다.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자포자기, 자살시도, 혼자 있으려함, 잡념이 많아짐, 의존적 성향이 높아짐, 낮은 자아존중감, 신경쇠약 등의 증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남.

③ 분노

사회, 가족, 가해자, 믿어주지 않는 부모, 선생님, 친구에 대한 분노, 나에게 대한 분노(학대를 그만 두게 하지 못한 못난 나, 일찍 말하지 않은 나, 회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한 나).

④ 죄의식

‘내가 조심하지 않았나?’, ‘나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 등의 죄의식을 갖게 된다.

⑤ 해리

사건 당시의 기억 손상, 정체성의 상실, 과도하게 환상에 빠지거나, 백일몽, 몽유병, 상상 속의 친구를 그려내어 갈등을 회피하게 된다.

⑥ 공격성의 증가

충동조절이 어려워지며 과격한 행동, 만성적인 불복종, 반사회적 행동, 난교 등에 빠지기도 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경계선성격장애

성폭력피해자들은 신경쇠약, 자기학대, 자기 파괴적 성향,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이 아주 심각하고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다중인격장애 환자들 중에서도 과거 성폭력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상당수의 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아동기에 심한 성학대를 받거나 청소년 및 성인기 동안 강제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양상을 갖지만 불안, 안절부절, 적대감, 사회적 회피, 불신, 죄의식, 악몽, 집중력 저하 등 전쟁, 테러리즘, 자연재해, 흉악범죄 등의 피해자들과 공통된 여러 반응을 나타낸다. 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로는 진단적으로 불안장애(특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성격장애(특히 경계선성격장애), 해리 장애, 알코올 및 중독 장애, 정신분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 입원이나 치료를 요하는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사회적응 문제

사회적 지지는 성폭력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타격을 준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회피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거주지 이전, 전학, 이직, 사회적 모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들에게 취약하다는 느낌을 유발시킨다.

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습장애, 학교등교 거부, 집중력 상실, 무단결석 등의 사회 부적응 상황이 나타났다. 또 가정생활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가출 시도, 남성 혐오, 무관심, 회피, 결혼 거부 뿐 아니라 친구, 친척관계도 소원해져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는 피해사실을 숨기고자 노력하지만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극단적인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통 받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진 뒤 가족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고 부끄럽다며 이혼을 강요받거나 견디다 못해 가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에 유입되거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왜곡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의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성적으로 위축되고, 성행위에 대한 혐오, 증오감, 배우자와의 성관계의 어려움, 성적 불안감, 성적 관심 감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아동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여성의 경우에는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나타내거나 빈번한 성기 노출, 자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성적 기능상의 장기적인 문제점으로는 성 불감증, 성적 죄의식, 성적 불안감, 낮은 성적 자아 존중감,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증오감, 두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역기능이 심각함을 반영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적인 행동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가족 내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성인기에는 강간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며, 일상적인 애정의 표현과 성적인 접근을 혼동한다. 다른 반응으로는 성적인 위축을 보여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성적인 친밀감을 거부하고 성적 정체감을 갖지 못해 여성인 것을 불편해 하여 남성적인 행동이나 복장을 선호하는 반응을 보인다.

6.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가 지속될수록, 피해의 후유증은 심각하며 오래 시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의 자원(건강, 학력, 지지망)이 부족할수록 피해에 대한 해석과 귀인이 왜곡되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직자에 의한 피해는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사람에 의한 피해라 친족성폭력에서의 피해 후유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 성폭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의도를 갖고 취약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이고,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나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신앙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세뇌시킨 상황에서 피해가 있었거나, 신뢰하고 의

지하던 대상이 자신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하는 욕구를 이용하여 유린하였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입증할만한 폭력이나 강압이 없어 폭력이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을 때, 자신이 판단을 잘못된 것인지, 동조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고 자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식한 후에도 교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성직자에게 분노표현이나 문제 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올 수 있는 가해자의 방어나 공격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실제 성직자인 가해자를 변호하는 주변사람들에게 ‘성직자를 유혹했다’, ‘시험에 들게 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이다’ 등 강력한 비난과 배척을 받곤 한다. 또한 가해자의 반대편이거나 공격하는 세력들에 이용되는 상황이 되었다가 결국 소외당하는 이차피해를 겪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기도 한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때 연대하여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 교회 내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힘을 받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이 안에서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서 배척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상실감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게도 되고, 교회 당회, 교단에서 적절한 처리나 사법적 처벌이 미흡했을 때의 실망감, 해임 당하고 처벌을 받고나서도 교단을 옮겨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분노로 장기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해자를 피하여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상처가 되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 문화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

7. 교회 내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1) 피해라고 느낀다면?

성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도에게 어떤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성직자는 신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심과 인정, 착취와 유린이 교묘하게 섞여 있을 때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혼란스러울 때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에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도 있지만 가해자 편에 서서 비수용적이고 적대적으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지망이 되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분별해야 한다.

교회 내에 지지해줄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내부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전문 성폭력상담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지역에 소재한 성폭력상담기관을 안내해 준다.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법적 지원(변호사 자문, 무료법률 지원, 법정 동행, 의견서 제출 등)이나 심리적 지원(심리검사, 심리치료,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의료적 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복지적 지원(피신처, 쉼터, 자립지원) 등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교회 내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보고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자가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의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녹음, 증언)들도 준비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 나가는 일이 간단하거나 빨리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을 함께 해줄 교우나 지원 단체, 지원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2)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가까운 주변사람(교인)이라면?

먼저 교회 안에서도 성폭력 피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래야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보내는 여러 가지 도움요청신호(SOS)에 민감해질 수 있다. 가해자의 위상, 가해자와의 관계, 관계의 친소에 따라 나타내는 주변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매우 어렵고 예민한 사안은 가족보다는 친한 친구나 교우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이때 피해자의 위기 상황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더 이야기를 하여 나누도록 한다. 어떤 경우든지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앞서나가지 말고 설부른 위기로 안심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한 이후 이상하게 보거나 소외 당할까봐 두려워하므로 안심을 시키고 믿음을 주도록 한다. 피해자를 대할 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나 통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대부분 믿으려하지 않고 회피하고 거부하기 쉽다.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제대로 처리되도록 돕겠다고 안심시키는 일이다.

② 피해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피해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의 특수성과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아무리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도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다그쳐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

③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잊어버려라’, ‘아예 생각하지 마라’ 등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기다려 주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④ 어떠한 경우이라도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위계나 회유로 지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도 양가감정(가해자에

대한, 자신에 대한)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가해자에게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3) 교역자 등 사건 처리 책임자라면?

종교기관 교역자는 교인의 가정생활을 파악하고 각개인의 내면적인 고민을 상담을 통해 도와 줄 수가 있다. 많은 경우 종교기관 교역자(성직자, 목사 사모, 전도사, 아동부·중고등부 교사 등)가 피해의 우려가 있는 가정에 유의하고 개입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생활현장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종교기관의 완고한 윤리·도덕적 분위기는 가정의 치부나 성적인 부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성직자이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변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토로 이후 낙태를 죄악시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설득을 받고 힘들었다는 호소하기도 한다. 성폭력을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로 보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종교는 피해자의 치유와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8.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치유·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피해 이전에 가졌던 피해자의 특성, 건강, 학력, 신앙 등 자아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난다. 많은 연구에서 회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 이후 누가 옆에서 어떻게 배려하고 지지하였는가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원체계에는 부모, 가족, 친구, 이웃 등 사적인 지원체계와 학교, 종교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상담지원기관 등 공적 지원체계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가 나름대로의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산간 도서 및 소외계층을 망라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지지망이자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가족과 이웃, 교사, 사회복지사, 성직자들이 성폭력피해자의 SOS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인지하여 즉시 대처·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에서는 성폭력범죄전담수사관, 재판부를 설치하고,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에서는 1인당 400만원 한도로 형사고소대리, 민사소송, 가사소송,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통역, 번역비까지 지원하고 있

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형사 소송 구조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산부인과, 외과적 치료와 법적 증거 채취,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낙태비용,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심리평가, 심리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입원 치료시의 간병 비용까지 지원하며, 피해자의 가족까지 심리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피해자의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 돌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에 150여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피해자센터를 비롯하여 20여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34개소의 해바라기센터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특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치유회복 프로그램이 개별상담, 집단상담, 캠프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8세 미만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학업지원을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중앙지원단에서는 희망샘물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법률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자립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나 형제·자매를 위한 가족상담,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에 있어 비가해 보호자의 심리지원 상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

교회, 성폭력 피해에 왜 취약한가?

교회 성폭력에 대한 사회 구조적 접근

최순양 박사 |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교회가 일반 사회와 달리 왜 유독 성폭력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기민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주로 남성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과 일반 여 평신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이 글을 통해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은 남성목회자와 평신도사이에 일어나는 성폭행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 매우 유명한 목회자가 평신도 여성들을 성폭행하고서도 여전히 건재하게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회에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다루어보면서, 그런 일들이 왜 교회라는 곳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J목사 사건 - 스타목사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나 관용적인가?

S교회를 담임했던 J목사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왜 일반인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와 달리 모든 행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이 더 지연되고 감추어지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J목사는 소위 ‘스타목사’였다. 유명한 저서도 너무 많았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이끄는 데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목사였다. J목사의 성범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자매를 당회장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처녀임을 강조하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함(1회).
- 2) 안마와 지압전문가에게 옷을 벗고 다리를 올린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고,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달라고 요구함.
- 3) 주례를 부탁하러 온 성도에게 문을 잠그라고 하고 안아보라고 요구하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처졌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 4) 강대상 옆 커튼 안 보이는 공간에서 피해자매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시도
- 5) 교회에서 여성 신도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감(상의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함).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J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 및 운동단체 까지 결성해서 목사의 사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그에 응당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J목사의 사건은 본인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젊은이 교회로 부응하여 성도수가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당회 구성원의 수가 불과 4명밖에 없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4인위원회’가 2010년 9월 뉴스엔조이에 기사를 내면서, ‘3개월 설교정지, 6개월 수찬정지’라고 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회는 비밀리에 이를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 J목사의 안식년이라고 광고했다. 같은 해 10월 교회 개혁실천연대 측에서 총 3부 14개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S교회 측은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의혹이 불거지자, J목사는 2010년 11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9일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교회와 해당목사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만 할 뿐 ‘죄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 이후 J목사는 교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문이 돌았다(퇴임 후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S교회는 “주택구입 명목으로 10억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향후 몇 년간 목회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치유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세 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²⁾

1) 구조적 문제: 범죄자를 옹호, 은폐하려는 교회

S교회는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J목사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몰아세운다거나(신천지에 영향을 받아 녹음기를 가지고 목사실에 들어갔다는 등), J목사에 대해 치료든 처벌이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식년을 갖는다고 교인들을 속였다. 게다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교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고소를 했다.

① 당회의 비민주적 구성과 합의구조

S교회의 교인이 2만 명이라고 한다면 최소 장로가 500여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무장로는 6명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이 많아서 장로의 수가 적다고 하는 논리를 피지만, 예장 합동 헌법에서 35살이면 시무 장로가 될 수 있다. 만약 담임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교인의 숫자에 비례한 장로들이 좀 더 많았다면 그 대처방식과 양상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준비되지

2) 솜바꼭질 94-98p.

못한 몇 사람의 장로에 의해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다. 노회가 아닌 당회가 징계를 한 것이나, 재판은 거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고민 끝에” 징계를 내린 것,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에게 공개적으로 결과 공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한계로 들 수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J목사의 성추행이 공식화된 것은 2010년 7월 10일이었지만, 162일 동안 당회는 다섯 차례의 사임처리 요구와 언론 보도를 통한 80차례의 간접 사임 처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³⁾

2) 성공과 권력을 쫓아서 - 자본주의와 권력의 논리가 판치는 교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S교회가 J목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고 은폐하려고 하고, J목사의 목회 성공률에 대한 미련으로 두둔하려고 한 태도가 교회에서의 성폭력을 계속 악화시키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J목사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어쩌다가 성문제로 넘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랬거나, 넘쳐나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두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목사가 이룩한 업적을 그가 행한 파렴치한 성범죄와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범죄는 많은 현상 중 하나일 뿐인 소소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J목사가 사임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무렵에 개척한 교회에서 교인들은 여전히 J목사를 목회자로 추앙하고 있으며 “목사님을 둘러싼 모든 소문이 분명 일부는 말도 안 되는 허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 한들 목사님을 성중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중보기도모임까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목회자가 여신도들의 몸을 수시로 만지고, 들추고, 언어적으로도 매우 성차별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함으로 피해여성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혔음에도, 피해자를 들추어내는 것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등, ‘기독교에 대해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지금, 굳이 폭로를 한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집단)보다 그것을 바로잡자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J목사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탄식하면서 술과 춤 등 환락문화에 취한 젊은이들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려는 꿈이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밝혔다고 한다.⁴⁾ 자신의 죄는 돌아볼 줄 모르면서 여전히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강대상 에 오르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옹호하고 떠받드는 교인들과 노회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진정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 교수는 “종교적 신앙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재물이나 권력 또는 성(性)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내세우는 집단을” 사 이비 종교라고 했다.⁵⁾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유창한 설교로 그들의 영혼의 복을 갈망해주는 목

3) 숨바꼭질 119p.

4) 숨바꼭질, 208p.

5) 이원규,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206p 여성신학 성서연구 “성폭력과 기독교”.

회자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속한 노회를 영향력 있게 하고 부흥시켜줄 목회자가(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눈감아주고 은폐하려고 하는 교회기관은 이미 존립여부가 의심스럽다. 늘 목회자의 성폭행의 배후에는 그 목회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식의 동업자 의식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더 감싸고, 피해자를 범 죄자로 몰아간다.

도서출판 은보 옥성호 대표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지금 큰 교회, 말 잘하는 스타목사라고 하는 “갑각”에 둘러싸여 있다고 개탄한다.⁶⁾ 설교를 들으면 반짝 힘이 나는 에너지 음료같은 속이 없어 오래가지 않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갑각이 떨어지면 연약한 속살밖에 없거나, 그 속살마저 이미 말라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3. 교회 여성 성폭력을 부추기는 교회적(신앙적) 요인들

위의 사례를 분석해 보자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 기반들이 성폭력을 더 은폐하면서 한 편으로는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여성들이 주로 당하는 성폭력은 목회자들로부터 행해지는 데, 이 경우 교회의 신조나 믿음 체계, 그리고 여성들의 신앙 교육 등을 악용해서 발생할 때가 많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이 교묘하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따라서, 성폭력을 부추기는 기독교 교육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공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오래 걸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먼저 여성들의 종속적인 지위, 교회에서 선포하는 여성상, 그리고 남성 중심적 성서-하나님 이해와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력을 들 수 있다.

1) 교회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 목회자의 ‘스타의식’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과 성적 차이보다도 더 교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분법적 종속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머리’이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게다가 그러한 남성들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전제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깊숙이 깔려있다. 게다가 남성은 지도력으로 여성은 그 지도력에 순종하고 종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부합된다고 하는 잠재적 동의가 존재한다.⁷⁾

이러한 역할 규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는 정당화되고, 남성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될 때가 많다. 이러한 신앙적 전제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남성의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찾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6) 숨바꼭질, 226p.

7) 깨어진 침묵, 144p.

이와 관련해서, 평신도가 목회자(대부분의 목회자는 남성이므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거의 유아기적 수준이다. 목회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회자가 성경구절을 인용한다거나 신앙적 조언을 하면서 성폭행을 강요할 경우 그것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성 목회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서 세 명의 여신도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안마를 요구했다(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인 여신도는 그 상황이 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⁸⁾

앞서 이야기한 J목사의 경우도 성경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부부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준다면서 성폭행을 감행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남성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양상이 있다. 레디거(Rediger)라는 학자는 교회 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연구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스타의식’을 쉽게 경험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신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며,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며,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상벌을 주고 충고하는 등 뭔가 아주 중요하고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타로서의 자신을 내면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자신에게는 도덕적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⁹⁾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충고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은 책임을 묻지 않는 현상은 성적으로까지 부정적 행동을 귀결시킨다. 스타의식 속에서 마치 평신도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를 흠모하는 교인의 판단력까지 마비시키게 된다.

2) 여성상

교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신도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존재하는 데, 그러한 모습에 대한 내면화가 정작 여신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부당하다거나, 저항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은 봉사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무엇을 요구하든 - 심지어 성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항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여성상은 자신의 고난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여성상이다.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자신이 감내하고 목회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목회자를 고소하지 않겠다’ 하는 대응

8)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18p.

9) 정희성, 123p.

을 하게 되는 것도 여성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이 여성의 신앙적 미덕이라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교회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고 쓰임 받는 목사님이니까 치유되시길 기도해드릴 뿐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¹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은 유혹적이고, 남성보다 본능적이며 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이다. 창조설화에서부터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아담까지 타락시키게 만든 원인으로 투영되어서 비추어졌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성서에서는 유혹적이고 부정적이고 죄가 많은 여성으로 해석되어왔다. ¹¹⁾ 실제로 J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신도들(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공개하였다) 일부러 그 목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녹음기까지 준비한 신천지 교인이라고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듯이 교회는 여성들에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남성 앞에 굴종과 순종을 강요당하거나 무력하게 스스로를 타하게 만드는 여성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시켜 왔다. 이러한 여성에게 강요되는 역할, 과제, 성적 정체성은 설교와 같은 교육적 계기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전달되고 주입될 뿐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목회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여신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요되고 있다.

3)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 남성적 하나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는 많은 경우, 여성의 종속과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 읽혀져 왔다. 성서적 인간이해가 남성의 경험이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서의 주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남성들이고, 여성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남성의 관점에서 읽혀진 여성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여성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혹은 ‘여성은 자손을 낳기 위한 성적 도구이다’ 등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 왕의 아내로 삼게 하는 이야기(창 12장), 롯이 소돔 시민들로부터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배에게 자기 딸을 겁탈하도록 내어 놓은 이야기(창 19장), 레위인의 첩이야기 - 남편으로부터 방치되어 베냐민 사람들에게 겁탈당하고 문밖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삿19장), 혹은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서 그 서원대로 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한다고 자매가 아버지의 침소에 드는 이야기 등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되지 않은 이야기가 성서에는 너무도 많이 등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서의 여성이해는 피해자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의 경험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마비시킨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기 보다는 더 좌절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²⁾

여성의 성폭력 경험에서 문제시 되는 신학적 메시지 중에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내

10) 숨바꼭질, 56p.

11)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깨어진 침묵”, 146p.

12)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4p.

면화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들 수가 있다. 기독교 교육 속에 익숙해있던 여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남편, 혹은 남성 목회자와 더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¹³⁾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은 하나님이 남편이나 남성 목회자의 편에 서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이미지는 피해자 여성들에게 묘한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받은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과 남성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생각은 목회자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줄 수 있는 수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많은 경우 피해자 여성들은 자책을 하거나, 넘어가려고 하고, 혹은 가해자인 남성 목회자를 두둔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성폭력의 윤리적 문제성에 대한 교회의 자각부족

앞서 J목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회자가 엄연히 성폭행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유능하다는 이유로, 그 설교를 들으면 신앙생활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교인들과 기관에서 범죄자인 목사를 두둔하고,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포춘(Fortune)이라고 하는 학자는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역할의 범죄’라고 규정한다. 목회 관계의 특징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바탕을 둔다. 평신도는 목회자를 같은 인간이기는 해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기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다.¹⁵⁾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회관계에서의 성폭행은 평신도의 연약함과 종속성을 악용한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호성과 평등성이 있을 수 없는 관계에서 벌어진 어떤 성행위도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목회자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회의 실정은 여전히 힘 있는 목회자의 편을 들기 일쑤이고,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두둔하고 은폐하려고 한다. 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하지 않고 있다.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하며, 여신도들에게 복종과 묵인을 강요했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고소하는 경우까지 있다. 교회가 약자를 존중하고 강자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간직해 왔다면, S교회의 일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가진 자의 편을 들고, 정의롭고 바른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고 일시적 평안을 주는 목회자를 추종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

13)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19p.

14)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8p.

15)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24p.

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근절과 해결방식보다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더 밝혀내지기 어렵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찌 보면, 불의를 눈감고 약자를 외면하는 교회의 왜곡된 신앙에서 기인한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필자는 교회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 참고문헌

-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40집 (2013).
- 온라인카페<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편집팀 “숨바꼭질: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 ” 대장간, 2014.
-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폭력과 기독교” 여신협 여성신학사, 1995.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깨어진 침묵 : 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응답” 여성신학사 2001.
- 한국염, “교회 내 성폭력의 상태와 과제” 기독교사상 (1991년 1월).
- 제임스 뉴턴 플링 지음, “성폭력과 힘의 악용,” 이화목회상담센터 옮김, 정희성감수 : 한울아카데미, 2015.

3

교회는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회의 실천적 노력

임보라 목사 | 섬돌향린교회

1. 들어가는 말

성령강림절이 시작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 후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사도행전 2:)가 임하여서 일어난 성령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고린도전서1:2)이 모인 곳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디모데전서3:15)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관련하여 종종 당혹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거룩한 이들이 모인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맞닥트릴 때 우리가 바라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회도 이 사회의 한 면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성(聖)과 속(俗)으로 분리된 교회와 사회의 이분법적 관념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

성폭력 뿐 아니라 사기, 폭력, 횡령, 절도 등의 사회적으로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사건들이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민수기 35:32)고 되어 있으나 살인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폭력을 행한 자가 교회를 도피성으로 착각하고 도리어 활개치고 다는 일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된다.

비단 교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범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사회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으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 평화, 생명 등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한 채 역주행하는 권력의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성폭력 사건’을 직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며,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

2.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인가? 공동체의 문제인가?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 ‘공동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 나아가 조직 전체의 현주소를 다시 묻고 여러 겹의 복잡한 고민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간단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전력을 세워 나가려는 태도를 공유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성폭력 사건은 일대일, 혹은 일대다의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교회 구성원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교회 구성원일 경우, 혹은 양측 모두 교회 구성원은 아니나 교회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둘 혹은 다자가 알아서 스스로 풀어가도록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루트로든 교회로 요청이 왔을 경우 이는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공동체’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자괴감을 비롯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가해자로 인하여 개인을 향한 신뢰 뿐 아니라 공동체에 가져온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누가 내 호소를 들어줄 수 있을 것 인지부터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도 괴로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26-27)라는 성서구절을 즐겨 암송하면서도 실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지체가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줄까 두려워 심지어 교회나 담임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두려워 그 한 지체를 잘라내기 급급한 상황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하물며 가해자가 담임목사일 경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전병욱 사건’만 보더라도

16)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전희경,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2012 한 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8쪽.

도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폭력사건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사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조직 문화’가 허용해 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¹⁷⁾ 하며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그러한 ‘사건’을 낳은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의 요청과 연결 될 수밖에 없다.”¹⁸⁾

3. 교회의 실천적 노력

필자는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목회의 여정에서 몇 차례의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였다. 슬프게도 부지기수로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성폭력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고, 곤혹스럽고, 잠을 지새우게 하곤 하였다. 도식화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많은 경우 피해자가 먼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도리어 요청받은 내 자신에게 더욱 기운을 북돋워줄 때가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가해자는 회피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 이제 교회공동체를 둘러싼 성폭력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나누면서 교회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유형

일반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를 둘러싼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하다. 데이트성폭력¹⁹⁾을 비롯하여, 스토킹²⁰⁾, 도촬²¹⁾, 사이버 성폭력²²⁾을 비롯한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 성폭력 대응 방법

17) 같은 글, 10쪽.

18) 같은 글, 10쪽.

19)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큼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http://fc.womenlink.or.kr/275>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http://fc.womenlink.or.kr/275>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1)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촬영함 (다음 어학사전)

22)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http://fc.womenlink.or.kr/275>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특별법, 형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법적 처벌 이전에 공동체 내부에서의 해결을 먼저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성폭력이 많은 경우 지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니까, 교인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이 과정을 ‘공동체적 해결과정’으로 명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대응 활동이 시작되게 된다.

① 피해상황에 대해 알림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다른 교인 또는 목회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인들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②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고통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시작이다. 그러나 종종 이 말은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으라는 말이나?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끊임없이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가 수수방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정황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내 안의 분노를 끌어내주고, 소중한 내 자신이 치유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성폭력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상황, 그리고 필요로 하는 요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3)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정

해결을 위한 과정 중 먼저, 피해자와의 직·간접적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갖게 되는 불안감, 공포심, 무력감 등을 대처할 수 있도록 ①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며, 물리적 상처로 인한 ②의료 지원, 법적조치를 위한 안내와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③법률지원 그리고, ④법적조치를 대비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제보를 받은 1인만 움직이기 보다는 가급적 피해자가 혼자서 아픔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의 동의 아래 모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여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의전화나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여, 피해자 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필요한 조치들이 세심히 배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교회공동체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예.

다음의 내용은 교회공동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① 20**. 9월.

교회 내 성폭력/성희롱의 대안 모색을 위해 여성의전화 대표를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② 20**.10월.

예배 후 ***와 @@@가 연합하여 교회내성폭력및성희롱예방 관련 강연회를 준비 중임이 보고되었다.

③ (8개월 후인) 20**.6월.

- 교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성폭력사건의 경과보고와 함께 반성폭력 내규 제정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가해자는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할 것을 요청)

- 동년동월. 성폭력대책위원회(안) 구성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기구, 대책기구 구성에 동감하고 당회 소속 기구로 만들기로 하였다. 본 위원회의 성안을 ***과 목회실에서 공동으로 작업한 후 익월 당회수련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제안한 단위에서 내규 안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안하기로 하였다.

- 피해자의 요구안에 따른 교회차원의 문서는 ***와 목회실의 명의로 전달하되, 당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성폭력대책위원회 및 내규를 만들기로 했고, 향후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넣기로 하였다.

④ 20**.7월.

교회 성차별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안)과 관련하여 당회에서 내규제정소위원회를 3명의 장로와 1인의 교우로 구성하여 내규(안)을 검토하여 2개월 후 당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⑤ 20**.8월.

성폭력 사건 등 처리를 위한 내규는 내규제정소위원회에서 9월3일 의논한 후 수정하여 9월 당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다

⑥ 20**. 9월.

당회에서 위임한 내규제정소위원들이 검토하여 제출한 규정(안)을 당회원들이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당회 때 확정하기로 하였다. 추후 설명회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⑦ 20** .10월.

***교회 성폭력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한 규정을 내규제정소위원회가 검토한 내용대로 결의하고, 추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당회 산하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을 ***장로가 위임받아 목회실과 상의하여 11월 당회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⑧ 20** .11월.

***교회 성폭력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한 규정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자를 ***장로가 보고하였다. (목회자 1인: 40대 여 / 전문가 4인: 산부인과 전문의, 50대 여/ 정신과 전문의, 60대 남/ 여성학자 50대 여/ 변호사, 40대 남 / 교인 3-4인: 30대 여, 20대 여,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근무경험 유, 20대~30대 남성교우 등) 12월 당회에서 구성을 완료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사례비는 ***부서와 의논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⑨ 20** .12월.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보고 및 승인

⑩ (익년) 20** .4월.

- 제1차 ***교회 당회 산하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경과보고와 함께 당회 산하 규정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알리고 위원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주보에 공지하고 교인들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 중 추가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 성폭력 사건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책과 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를 공동구매하거나 교회 예산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기로 하였다.

⑪ 20***. 5월.

성폭력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주보에 공지하고 전교인 대상으로 성폭력 감수성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을 당회에 보고하였다

⑫ 근래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로 개명하였다.

5) 추가설명

①과 ②는 이미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이고 이후 ③이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취해진 조치의 과정이다.

교인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목회실 공유에 이어 당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지만, ①과 ②의 과정 이면으로는 문제제기를 한 교회 내 그룹과 일부 당회원 간에 있었던 견해 차, 시각 차이로 인한 상당한 격론이 오고가기도 했다. 그 차이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이견으로서 ‘남성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입장을 통해 가해자에게 온정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①과 ②사건은 제보를 받은 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사한 여러 건의 일들

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증인의 동의를 얻어 각 사례에 정황을 수집한 후, 당회원과 목회자가 가해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 사후 대처관련 대안을 논의하던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교회출석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여 지속적인 대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③이하의 사건은 목회자가 사건을 제보 받은 후, 피해자 면담과 가해자 면담을 각기 진행하고, 지지그룹형성, 당회 공유 등을 거쳐 가해자가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교회출석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성폭력사건은 이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외부 단체로부터 교우와 관련된 사건을 제보 받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건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된 대로 다양한 성폭력 사건유형이 교회공동체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한 바 있다.

4. 나가는 말

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피해자 vs. 가해자’나 ‘피해자 요구안 vs. 조직의 수용/불수용’의 구도가 아니라 ‘의미화 vs. 의미훼손’이라는 틀로 이해해 보자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어떤 공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발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 투쟁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행실과 몸가짐과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고 그런 인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라고, 피해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이라고, 농담/칭찬/말실수니까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모욕/대상화/굴복시키려는 행동을 ‘정상’이라고 용인해 온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³⁾

교계와 교회공동체를 둘러싼 성폭력 사건은 이번 포럼의 제목과 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²⁴⁾이다. 그런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한 구체적 교회 내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실천은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고, 이제껏 교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용인되어 온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

23) 같은 글, 32쪽.

24) “100여건의 상담 사례 중에 강간이 61건이고, 성추행이 38건 등 이었지만, 사회 법정이나 교단에 고소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2007통계)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선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무성의한 태도에 피해자들은 좌절한다. 교단에 도움을 호소하면 사회법정에 고소하라고 한다. 실행을 받으면 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교회목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목사는 “김홍도 목사가 자신보다 더했다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한 유명 부흥사는 피해자와 중간에 합의를 보고, 우리에게는 상담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했다.” <교회 안 성폭력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교회협 발제문] 성폭력 가해 피해 막을 수 있는 길 찾기>, 박성자, 2011년7월20일.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19>

성(聖)과 속(俗)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하지만, 실제 성과 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힌 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온갖 언어, 정서, 물리적 폭력은 진정한 성(聖)을 파괴하는 성(性)적 범죄이다.

앞선 사례에도 짧게 언급했듯이 이는 이성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성폭력은 ‘권력’과 ‘부정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자에 의해 약자가 희생되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각주9)의 참고문헌에는 <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신도들이 할 일’ 중,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와 같은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 뿐 아닌 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다만 교회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주장’과 ‘분명한 거부 의사’ 대신 ‘순종’과 ‘복종’을 강요해왔다. ‘자기주장’과 ‘분명한 거부 의사’는 마치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하지 말아야 할 불문율의 행동지침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목회자와 주님을 하나로 착각하고 자기주장과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무기력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여성들이 교회 내 권력의 중심으로 부터 겪게 되는 성폭력 상황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인식 속에서 순종형 여성, 성에 대한 모든 터부와 낙인 등으로 인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사회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장치를 갖게 되었다. 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성폭력 사건이 어이없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채 마무리되는 사건들 또한 부지기수임을 신문기사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뒤쳐진 속도로 ‘장치’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개 교회가 갖추기 어려운 만큼, 교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마련해야 하는 예방책들이 있음에도 각 교단의 고질적인 갈등이나 어처구니없는 권력 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유야무야 하느라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단의 정책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생명을 갈구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연합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워둔다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실제 들여다보면 기독교 단체, 교회, 소단위 모임 등등에서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사안이 녹록하지 않다. 누군가의 고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을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는 각 교단마다 목회자 교육 과정에 성평등을 비롯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목회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자주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하거나 불편하게만 여긴다면, 이는 암암리에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꼴인 셈인데 과연 이것을 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간 면담해 온 사례를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 명료하다. 그것은 가해자로부터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이다. 그러나 번번이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부인, 회피, 헐박, 폭력 등에 피해자가 다시금 노출되곤 했다.

지지그룹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만큼 이 사안에 있어서 절실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끝마무리’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하는 사건의 종결임에도 이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끝이 아닌 끝이 되어버린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성폭력사건의 해결 과정은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변화는 물론, 공동체 문화와 인식의 변화, 특별히 교회는 성의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시행한다고 해도, 그 몇 차례의 교육으로 금방 전체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만큼 공동체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공들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회의 특성상 한 조직의 리더가 갖는 인식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교회의 개혁은 제도만이 아닌 공동체 문화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양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막나하여 공동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상담소와의 공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매어 두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중심적 교회의 관행들이 하루빨리 깨져 나가기를 기원하며 공동방안 마련에 참여하고자 한다.

○○ 교회 성폭력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회 내/외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과 성폭력 사건 등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교회 교인(목회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교회 내/외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에 ***교회 교인(목회자 포함)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되었을 때도 적용된다.

제4조 (처리 절차의 개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성폭력 사건 등을 목회자 또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즉시 처리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1.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3. 위원회는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 전문 기관의 도움을 원할 경우 바로 적절한 기관과의 연계를 돕는다.
4.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성폭력 피해자의 존중과 권리)

1.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판단과 상황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 ② 가해자에게 교회 출입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리
 - ③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질 권리
 - ④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 ⑤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알 권리
- ⑥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2장 성폭력대책위원회

제6조 (설치) 당회는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제7조 (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회 목회자 1인, 전문가 3-4인(산부인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성폭력 전문가, 법률가 등)과 당회에서 선임한 ***교인 3-4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조사와 중재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사건의 보고와 가해자 징계 요구
5. 필요 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
6. 회의록 및 상담기록의 보안 유지 및 보존과 관리

제9조 (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0조 (사건의 처리절차)

1. 위원회는 처리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한다.
2. 위원회는 피해자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다양한 처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여 제시한다.
3. 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4. 피해자 및 상담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상담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11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사과문을 작성 제출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당회에 요구하며 징계 여부와 그 내용은 당회가 결정한다.
3. 위원회는 가해자가 ***교회 교인이 아닐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한다,
4. 위원회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위원회에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하여 징계를 요구한다.
5. 위원회는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하여 징계를 요구한다.

제12조 (사건의 공개)

1.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회 내에서의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위원회에 사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공개 형식 등을 결정한다.

제13조 (사건의 처리 추적)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정 이후 위원회의 조치를 가해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한다.

제14조 (2차 가해)

1. 성폭력 가해행위를 옹호하고 가해자를 변호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2.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목회자 및 교우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4장 예방 교육

제15조 (위원 등의 예방 교육) 위원회 위원, 목회자 및 당회원은 필요 시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6조 (교인 예방 교육) ***교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반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반성폭력 교육의 준비와 진행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 발의하고 당회가 2011년 10월 9일 제정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소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
 교회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상담**,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이슈파이팅**,
 정관 및 재정조례 보급, 목회자 청빙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개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저도 교회개혁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개혁운동은 비둘기 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 같은 지혜를 지닌 이들이 힘차게 연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를 실시하며, 매월 재정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와 개별 메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정관 29조 3항 의거). 귀하의 후원은 교회개혁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름		교회	
이메일		핸드폰	
하고싶은말			
참여방법	<input type="checkbox"/> 관심회원으로 가입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후원함으로 소식지와 메일을 받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원활동으로 총회 참관활동, 피켓팅, 사진, 웹디자인 등을 돕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보기도자로 지원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전화 02-741-2793
- 팩스 02-741-2794
-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rchreform>

‘교회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포럼

발행일 | 2015년 5월 29일

발행인 |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편집인 | 김애희

편 집 | 이연정

발행처 | 교회개혁실천연대

(150-034)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Tel 02-741-2793

Fax 02-741-2794

protest@protest2002.org

www.protest2002.org